

[2024학년도 2학기 학위논문 연구계획서 제출 및 논문심사 프로세스]

◆ 학위논문심사를 받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과 같이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.

가. 자격시험(어학시험/종합시험) 합격자(연구계획서 제출 직전 학기)

나. 총평량평균 : 3.0 이상

다. 이수학점

- 석사/박사과정 : 30학점이상
- 통합과정 : 54학점 이상
- 연구지도 등 보충 및 청강과목은 이수학점에 포함되지 않음

라. 학위논문심사를 위한 연구계획서 제출 자격

• **상기 가) ~ 다)항 요건 충족된 자**

- 단, 학점은 수상 신청 학점도 해당 학기 학점 이수를 전제로 이수학점에 포함 가능(단, 미 충족 시 졸업 불가)
- 박사과정은 연구계획서 제출 학기에는 논문심사 불가 다음 학기에 논문심사 가능

• **휴학 또는 제적 학기에는 연구계획서 제출 불가(중요)**

마. 연구지도 교과목 이수(중요, 미 충족 시 졸업 불가)

- 연구계획서 승인 이후** 석사 학위과정은 '연구지도 I' 1학기 이상.
박사 학위과정은 '연구지도 II' 2학기 이상 이수하여야 함(중요)

- 연구계획서 승인 학기부터 연구지도 이수내역이 졸업요건에 반영되므로, 연구지도(I 또는 II) **수강 삭제 및 철회로** 연구지도가 미충족 되지 않도록 유의(학과의 개별연구지도와 달름. 혼동 유의)

1. 연구계획서 제출자격 : **직전 학기(2024-1)까지** 자격시험(외국어·종합시험)을 합격하고 연구계획서 제출

자격요건을 충족하는자는 학사포털에서 연구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. (단, 2024-2학기 휴학생은 연구계획서 제출이 불가하오니 복학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 휴학 중 제출한 연구계획서는 삭제됩니다.)

2. 학위논문 연구계획서 제출 절차

* 중요: 연구계획서는 반드시 학사포털로 제출해야 함.



가. (심사유형지정) 포털에서 **졸업심사 유형을 '학위논문'으로 설정되었는지 확인하고 '신청' 버튼 클릭(필수)**
(신청' 버튼 미 클릭 시 연구계획서 제출 화면으로 이동 안 됨, 유의)

나. (연구계획서 작성·제출) 연구계획서 제출화면에서 **연구계획서 정보 입력 후 '제출' 버튼 클릭(중요)**

다. (연구계획서 승인) 연구계획서 승인은 지도교수, 학과, 대학원으로 **шу자 승인이 되어야 최종 완료 됨**

3. **연구계획서 제출 기간 및 영문성명(여권과 동일하도록 권장)** 정정 기간 : **24. 8. 16(금) ~ 9. 13(금) 17:00까지**

- 학사포털의 영문성명은 모든 증명서에 반영되는 내용이므로 확인 필수, 성명 변경은 포털에서 신청

4. **박사학위논문 영문 작성**

- 학위논문에 관한 내규 제3조(학위논문) 2항에 따라 박사학위논문의 경우 2006년 2학기 신입생부터 논문의 영문 작성은 의무화 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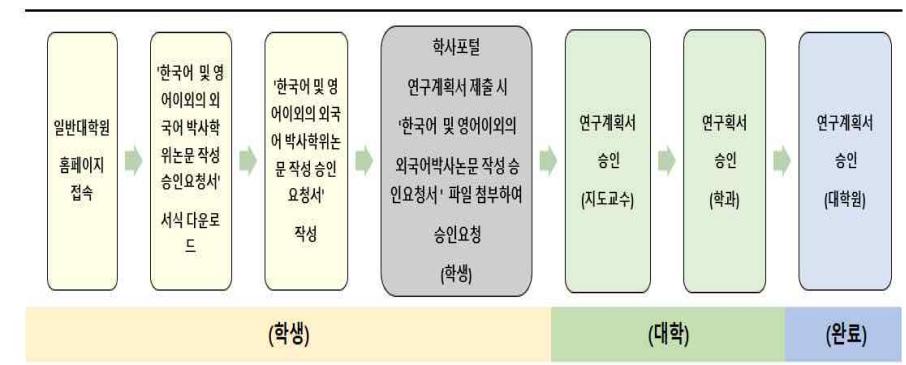
- 단, 영문 작성이 부적합한 특정한 주제는 지도교수가 승인할 경우 국문 및 영어 이외의 외국어로 작성할 수 있음

* 중요 : **박사학위논문을 국문 및 영어의 외국어로 박사학위 논문을 작성할 경우 24. 9. 13(금) 까지 연구계획서 제출 시 신청서를 파일로 첨부해서 지도교수, 학과, 대학원의 승인을 받아야함.**

* 박사과정 '영어 이외의 외국어 박사학위논문 작성승인요청서' 서식 다운로드 및 제출

대학원 홈페이지 → 학사안내 → 각종 양식 → 학위논문/졸업 관련 서류 양식 → '한국어 및 영어 이외의 외국어 박사학위논문 작성 승인 요청서' 다운로드 → '국문 및 영어 이외의 외국어 박사학위논문 작성 승인 요청서' 작성 후 지도교수 서명 → 학사포털 연구계획서 제출화면에서 파일 업로드 (필수)

- 박사학위논문 국문 작성 승인 절차



5. 논문심사위원명부 등록 및 승인

- (학생)심사위원명부 풋털 등록: 24. 9. 13(금) 17:00까지

→ (학과) 심사위원등록승인: 24. 9. 25(수) 17:00까지

심사위원은 본교 재직 여부에 따라 교내, 외부 심사위원으로 구분하여 입력

심사위원 구분		교원 번호	[학사포털 심사위원등록]
(본교 재직 여부에 따라 구분: 교원번호 유무)			
교내	본교 및 국제캠퍼스 소속으로 교직원번호가 있는 경우	O	심사위원장 심사위원
	의료원, 미래캠퍼스 소속으로 교직원번호가 있는 경우		
외부	외부 소속 박사학위 소지자 (즉, 본교(국제캠퍼스), 의료원, 미래캠퍼스 소속이 아닌 외부 박사학위 소지자)	X	외부 심사위원
			

- 석사/통합(중단) 과정생 : 연구계획서 승인 후 학위논문 심사위원 등록(심사위원장, 심사위원)

- 박사/ 통합 과정생 : 연구계획서 제출 학기에는 지도교수만 등록하고, 학위논문 심사 학기에 학위논문 심사위원 등록(유의)

가. 교내(내부) 심사위원 : 전임 및 비전임 교원

- 1) 본교 소속 : 교직원(급여)번호와 심사위원번호 일치 확인
- 2) 본교 의과대학·치과대학·간호대학 및 미래캠퍼스
- 교직원(급여)번호와 심사위원번호 일치 확인
- 3) 주의사항: **명예교수-비전임교원으로 재직중이고 교원번호가 있는 경우 '내부'**

나. 교외(외부) 심사위원 (석사는 1명, 박사는 2명까지 선정 가능, 외부 심사위원 인원수 준수 필)

: 외부 소속 박사학위 소지자로 본교(국제캠퍼스), 의료원, 미래캠퍼스 소속이 아닌 자, 퇴임교원(외부심사위원번호)

* 학위논문에 관한 내규 제2조에 의해 박사과정은 2학기 이상 논문지도를 받아야 함

: 박사과정 학위논문심사는 연구계획서를 승인받은 학기에는 학위 논문심사를 받지 못하고, 연구계획서 승인 그 다음 학기에 논문심사를 진행하게 됨을 각별히 유의!

대학원 학칙 제 7장 학위논문

제31조의2(교원 자녀 논문 심사위원 관리)

- ① 본교에 재직 중인 교원은 본인의 자녀가 작성한 학위논문의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을 금지함을 원칙으로 한다.
- ② 전학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고자 할 경우 해당 교원은 사전에 소속 주임교수 및 대학장을 경유하여 대학원장에게 신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6. 대학원 학위논문에 관한 내규

제4조(논문지도교수의 자격)

- ① 우리 대학교의 교수, 부교수 및 박사학위를 소지한 조교수는 학위논문 지도교수가 될 수 있다.
- ② 논문지도교수는 청년퇴임 시까지 석사학위과정은 4학기 이상, 박사학위과정 및 석·박사 통합과정은 6학기 이상 지도할 수 있는 교수 중에서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.

제7조(심사위원 선정)

- ① 학위논문 심사위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논문지도교수가 추천하여 주임교수가 승인하고, 심사위원 변경은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 1. 석사학위논문: 3인
 2. 박사학위논문: 5인
- ② 심사위원의 자격은 제4조에 규정한 논문지도교수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 한다.
- ③ 외부 심사위원은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로서, 석사학위 심사위원 중 1인, 박사학위 심사위원 중 2인까지 선정할 수 있다. 단, 학과의 특성에 따라 불가피하게 외부 심사위원의 추가 위촉이 필요한 경우, 최대 1명 이내에서 추가 위촉을 신청할 수 있으며, 해당 학과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8조(심사위원장)

주임교수는 심사위원 중에서 **우리 대학교 소속 전임교원 1인을 심사위원장으로 위촉**하며, 심사위원장은 의결권에 있어 심사위원과 동일한 권한을 갖는다.

6. 학위논문 예비심사

- 예비심사 : 24. 9. 27(금) ~ 10. 25(금)까지

- 예비심사 결과보고서(심사위원장 작성) 접수 : 학과 지정 기간에 따라 결과보고서 제출

7. 학위논문 본심사

- 본심사 : 24. 11. 15(금) ~ 12. 20(금) 까지

- 본심사 결과보고서(심사위원 전원 작성) 접수 : 학과 일정에 따라 본심사 결과보고서 제출

8. 학위논문 완성본 제출 (예정: 제출일은 변경될 수 있음)

- 온라인 제출 마감(예정) : 24. 12. 30(월) ~ 25. 1. 3(금)

- 책자논문 완성본 제출 마감(예정) : 25. 1. 6(월) ~ 25. 1. 13(월)

(제출처 : 연세·삼성학술정보관1층 Maker Space 학위논문 제출처)

* 인준서 날인(본심사 후 심사위원의 부재)이 늦어져 온라인 및 완성본 제출이 늦어질 수 있으니

학위논문 제출 기한이 지나지 않도록 유의!!!

9. 학위수여 예정 증명서 발급

: 예비심사 종료 후 예심 합격자에 한해 24. 11. 1 이후에 '학위수여 예정증명서'를 해당학기 졸업사정 전(본심종료일)까지 발급 가능하며, 24-2학기 졸업사정 기간부터 학위수여식 이전까지의 학수여 예정증명서 발행대상은 졸업예정자로 대체됩니다.

10. 유의사항

- 효율적이고도 원활한 학사행정을 위하여 위에 명시된 기한을 엄수하여 주시고, 미 이행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특히, 본심에 합격하였을지라도 완성된 학위논문을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할 경우, 학위수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 다음 학기에 졸업할 수 있음을 유의 바랍니다.

연 세 대 학 교 대 학 원